

[회의경과 및 회의결과의 요지]

1. 양형위원회 제112차 회의 내역

- 일시 : 2021. 10. 8. 16:00
- 방식 : 비대면 화상회의
- 주요 안건 : 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중 설정 범위, 유형 분류
②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

2.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양형위원 개입
- 2020 연간보고서 발간 경과 보고
-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 각종의견 접수 및 처리

3.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제142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

4.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가.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대한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설정 범위에 추가할 범죄와 제외할 범죄를 의결

1) 현행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추가로 포함할 범죄

- ①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 아동학대살해, ②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③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④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아동매매, 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음행강요·매개, 성적학대 등

2)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서 제외할 범죄

- ①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4호 유해곡예, ②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

나. 유형분류에 대한 논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

- 1) 별도로 ‘아동학대범죄군’을 신설하지는 않고,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은 각각 그 행위태양을 규정하는 개별 양형기준에서

반영

- 2)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양형기준 내에서 아동학대는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
- 3) 아동학대살해죄를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중 ‘아동학대’ 대유형에 분류

5.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구체적인 양형기준 수정 심의

가. 범죄군별 분류에 대한 논의

1)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

범죄군별로 다소 일관되지 않았던 다양한 합의 관련 양형요소(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등)를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제111차 회의에서 다음 표와 같이 정비하기로 의결한 바 있음

구분	보호법익	특별감경인자 검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일반감경인자 검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1-1	개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1-2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2-1	개인 및 국가·사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2-2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국가·사회	-	-

- 2) 이번 제112차 회의에서 범죄군별 분류에 대한 논의를 거쳐 현행 44개 범죄군을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하기로 의결

구분	범죄군
1-1	살인 / 강도 / 횡령·배임 / 약취·유인·인신매매 / 사기 / 절도 / 지식재산권 / 폭력 / 교통 / 공갈 / 체포·감금·유기·학대 / 장물/ 권리 행사방해 / 업무방해 (1유형) / 손괴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1유

	형) / 명예훼손 / 주거침입 / 배임수증재
1-2	성범죄 / 성매매 (1-가 유형) / 디지털 성범죄 (2, 3, 4, 5유형)
2-1	선거 (3유형) / 방화 / 업무방해 (2유형) / 근로기준법 위반 / 과 실치사 상 · 산업안전보건 (2유형) / 통화 · 유가증권 · 부정수표단속 법 위반 (2, 3유형) / 대부업법 · 채권추심법 위반 (2유형) / 유사 수신행위법 위반
2-2	식품 · 보건 (2, 3유형) / 성매매 (2-나 유형) / 도주 · 범인은닉 (1-2유형) / 디지털 성범죄 (1유형) / 위증 / 무고 / 공무집행방해
3	뇌물 / 공문서 / 사문서 / 식품 · 보건 (1유형) / 마약 / 증권 · 금 융 / 선거 (1, 2, 4유형) / 조세 / 변호사법 위반 / 성매매 (나머지 유형) / 사 행성 · 게임물 / 석유사업법 위반 / 도주 · 범인은닉 (나머지 유형) / 통 화 · 유가증권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1유형) / 대부업법 · 채권추심법 위반 (1유형)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환경

※ 살인범죄를 1-2 범죄군으로, 성범죄 중 3유형을 1-1 범죄군으로, 무고범죄
를 2-1 범죄군으로, 공무집행방해범죄 중 3유형을 2-1 범죄군으로, 배임수
증재범죄를 1-2 범죄군으로 분류하자는 소수 의견 있었음

나. 추가 정비 사항에 대한 논의

- 1) 현행 양형기준에서는 일부 범죄에만 들어가 있던 일반가중사유 또는 집
행유예 일반부정사유인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관련 요소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로 명
칭을 통일하고, 그 정의 규정도 정비하여 피해자가 있는 범죄(1-1, 1-2,
2-1, 2-2 범죄군)에서 일괄적으로 일반가중인자이자 집행유예 일반부정
사유로 설정하기로 의결
- 2) 「피해 회복 없음», 「미합의», 「피해 미변제»,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등
이 몇몇 범죄군에서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또는 집행유예 일반부정사
유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일괄 삭제할지 현행대로 유지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견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현행대로 양형기준을 둔 상태로
의견조회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을 다시 검토하기로
함

다. 양형인자 정의 규정에 대한 논의

- 선거범죄,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에서는 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
래와 같이 정의 규정을 추가하기로 의결

- 선거범죄 :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로 발언을 취소하거나 게시물을 삭제 하거나 보도를 정정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시정 조치가 선거일 직전에 이루어져 사실상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 한다.
- 명예훼손범죄 :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로 발언을 취소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 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를 포함한다.

라.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시기에 대한 논의

- 1) 제8기 양형위원회 임기동안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한 아동학대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각 양형기준은, 해당 범죄군 양형기준 수정 시 위 논의 사항(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을 반영하여 한꺼번에 수정하기로 의결
- 2)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함께 수정할 필요가 있는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폭력범죄, 명예훼손범죄, 주거침입범죄, 공갈범죄, 손괴범죄 양형기준 역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시 위 논의 사항(합의 관련 양형 요소 정비)을 반영하여 한꺼번에 수정하기로 의결

6. 다음 회의(제113차 회의) 일정

- 일시: 2021. 12. 6.(월) 오후
- 장소 : 대법원 회의실
- 안건 : 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권고 형량범위)
 ② 벌금형 양형기준 원칙 심의
 ③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